고시

돼지 오제스키병 방역실시요령 중 개정

(농림수산부 고시 제1996-30호)

-농림수산부-

농림수산부는 지난 6월 11일 돼지의 주요 전염병인 오제스키병 방역에 대한 철저를 기하기 위하여 돼지 오제스키 방역실시요령(농림수산부 고시 제95-31호, '95.5.22)중의 내용을 다음과 같이 개정했다.

현 행	개 정
제4조(검사실시기준 및 검사대상선정) ③ 오제스키병의 분포 확인이나 추적조사를 위하여 도축장에서 도축중인 돼지를 검사할 수 있다.	③ 오제스키병 발생농장을 확인하거나 추적조사를 목적으로 도축장에서 실시하는 돼지의 오제스키병 검사는 축산물위생처리법 시행규칙 별지 제14호 서식에 의한 도축검사신청서중 "출하농가 구입선"을 확인한 후 실시하여야 한다.
제6조(검사방법) 오제스키병 검사는 간이감별 진단법, 병원체 검사 또는 혈청중화시험(백신을 접종하지 아니한 양돈장과 종돈장에 한함)을 실시하여 감염여부를 최종 판단한다.	제6조(검사방법) ① 오제스키병 검사는 감별진단법, 간이진단킷트법, 병원체검사 또는 혈청중화시험으로 한다. ② 제1항의 검사방법중 간이진단킷트법과 혈청중화시험은 오제스키병 백신을 접종하지 아니한 돼지에 한하여 실시하며, 간이진단킷트법 검사결과 양성 또는 의양성으로 판정된 돼지에 대하여는 감별진단법으로 재검사를 실시하여 양성여부를 최종 판정한다.
제7조(검사결과 조치) ① 4. 임상증상을 나타내지 않는 혈청검사 양성돈은 시험소장이 지정하는 도축장으로 출하하여 가축 방역관의 지도·감독하에 도축하여야 한다.	…도축하여야 하며, 시험소장은 축주와 협의후 출하도축장을 지정할 수 있다.
② 양성축 발생 농장중 오제스키병 근절농장으로 인정받기 위하여는 사육중인 돼지 전 두수를 매 3개월 간격으로 연속 2회 검사한 결과 음성일 경우에 본병 근절농장으로 인정한다.	② 오제스키병 양성축이 발생하였던 농장의 축주가 동 질병 근절농장으로 인정받고자 할 경우에는 시험소장은 다음과 같이 오제스키병 검사를 실시하고 그 결과 음성일 경우에 한하여 오제스키병 근절농장으로 인정한다. 1. 검사횟수 : 매 3개월 간격으로 연속 2회 실시 2. 검사기준두수 : 종모돈·종빈돈·모돈·후보돈은 전두수, 육성돈·비육돈·자돈은 사육두수의 10% 이상
⑦ 도지사는 양성축 발생농장과 전파가 우려되는 인근농장에 대하여 방역상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야외감염개체와 백신접종개체를 구별할 수 있는 유전자재조합 감별백신을 접종하게 할 수 있다. 다만, 종돈장의 종돈(GGP, GP)에는 오제스키병 백신을 접종할 수 없다.	삭 제
신설	제7조의 2(백신접종허용 및 백신접종농장 관리) ① 도지사는 오제스키병의 피해확산을 막기 위하여 오제스키병 양성축 발생농장과 동 질병 발생농장 인근지역 양돈장(종돈장을 포함한다)에서 사육하는 돼지에 대하여 야외감염개체와 백신접종개체를 구별할 수 있는 유전자재조합감별백신을 접종하게 할 수 있다. ② 종돈장에서 오제스키병 예방목적으로 종돈(GGP, GP)에 오제스키병 백신을 접종하고자 하는 종돈장 축주는 관할 시험소장에게 별지 제2호 서식에 의한 오제스키병백신접종신고서를 제출한 후 백신을 접종하고 다음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.

현 행	개 정
	1. 접종허용대상 : 종돈장의 종모돈, 종빈돈 및 종돈장에서 육종 또는 번식을 목적으로 사육하는 후보돈 2. 백신접종 종돈장에서 일반 양돈장에 판매하는 종돈 또는 후보 모돈의 주령은 18주령이상으로 한정하며, 시험소장은 판매대상 두수의 20% 이상을 간이진단킷트법으로 검사하고 검사결과 전두수 항체음성일 경우에 한하여 판매허용 3. 종돈에 대한 백신접종일자, 접종두수 및 생산·판매등 현황을 기재한 종돈관리대장을 비치하고 1년이상 보관 ③ 제2항의 오제스키병백신접종신고서를 접수한 시험소장은 해당 종돈장의 백신접종 사실을 관할 도지사에게 보고하여야 하며, 도지사는 백신접종 종돈장명단을 축협 등 생산자단체가 발행하는 전문잡지등을 통하여 공표할 수 있다.
제9조(종돈등록과 검정시 확인 등) ④ 종돈장의 종돈(GGP, GP)에는 오제스키 백신을 사용해서는 안되며 시험소장은 종돈장 장기 검사시 이를 확인하여야 한다.	④ 시험소장은 오제스키병백신을 접종한 종돈장에 대하여 제7조의2 제2항의 준수사항 이행여부를 수시로 확인하여야 한다.
제11조(벌칙적용) 도지사는 종돈업자 및 등록 또는 허가 받은 양돈업자가 이 요령에 정한 사항을 위반하였거나 이행하지 아니한 때 또는 검사기관의 검사를 기피 및 거부하거나 양성축 발생농장에 대한 이동제한 명령을 위반할 경우에는 가축 전염병예방법의 관계규정위반에 따른 벌칙을 적용한다.	도지사는 종돈업자 및 등록 또는 허가받은 양돈업자가 검사기관의 검사를 기피 또는 거부하거나 양성축 발생농장에 대한 이동제한 명령등을 위반할 경우에는 가축전염병예방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벌칙을 적용한다.

부 칙

이 고시는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.

(별지 2호 서식)

오제스키병 백신접종신고서

종돈장	명 칭		종축업등록번호	
	경영자		전 화 번 호	
	소재지			
사육현황	◦ 종모돈 : 두 ◦ 후보돈 : 두 ◦ 종빈돈 : 두 ◦ 기 타 : 두 계 : 두(종모돈 : 두, 종빈돈 : 두, 후보돈 : 두)			
최초백신접종일			접종두수	

돼지오제스키병방역실시요령 제7조의2 제2항의 규정에 의거, 종돈장에서 사육중인 종돈(GGP, GP)에 대한 오제스키병백신 접종사항을 위와 같이 신고합니다.

19 년 월 일

신고인 : (서명 또는 인)

○○도 가축위생시험소(지소)장 귀하

210mm×297mm
신문용지 54g/㎡